

【 7 】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6. 9. 30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□ 제안이유

1996. 6.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조례명 “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”를 “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”로 변경.
- “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”를 “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”로 명칭을 변경함. (안 제1조)
- 위원회구성중 “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고 위원은 20인 이내”를 “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”로 하고, 위원장은 군수에서 부군수로 정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. (안 제2조)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명 “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”를 “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”로 한다.

제1조(목적) 중 “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”를 “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(구성)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항을 삭제하며, 제4항을 제3항으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자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명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</p> 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한다.)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제명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</p> <p>제1조(목적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조(구성)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,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③위원은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, 재산세과표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 담당공무원, 한국감정원, 감정평가사, 부동산중개업자, 농협 직원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와 토지평가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③삭제</p> <p>③현행④항과같음.</p>